

의안번호	2208931
의 퇴 인	문대림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0.
추계번호	25G138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,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적용기한 10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,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180억원 등 10년간 총 1,745억원(연평균 17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(안 제69조의2)	-127	-127	-127	-127	-127	-127
	-127	-127	-127	-127	-1,272	-127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(안 제87조의2)	-53	-52	-51	-50	-47	-47
	-45	-44	-43	-43	-474	-47
합계	-180	-179	-178	-177	-174	-174
	-172	-171	-170	-170	-1,745	-175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,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의2 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)	○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5년 12월 31일	
2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에 대한 비과세)	○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5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9조의2 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○	-
2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

-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
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 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, 2020~2024년 감면실적 평균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

나.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10년 연장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2024년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4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10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 및 부수 토지(이하 ‘축사용지’)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,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%를 감면하는 제도임

□ (감면실적)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○ 동 제도의 최근 연도별 감면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2]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: 2019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p	'20~'24년 연평균
감면실적	116	135	191	85	114	111	127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(2) 추계 방법

□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0~2024년 감면실적 평균(127억원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○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,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127억원, 2035년 127억원 등 10년간 총 1,272억원(연평균 12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	-127	-127	-127	-127	-127	-127
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10년 연장(안 제69조의2)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	-127	-127	-127	-127	-1,272	-127

나.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10년 연장

(1) 조세지출 실적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7억원, 2023년 43억원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(2021~2024년 연평균 24.2% ↑)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·임·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(만기 3년 또는 5년)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

[표 4]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 ¹⁾	연평균 ²⁾
조세감면액	40	35	37	43	67	46
(증감률)	(△24.5)	(△12.5)	(5.7)	(16.2)	(55.8)	(24.2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1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4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
-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4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「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~2028」(2024.10.)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활용

[표 5]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

(단위: %)

구 분	'23	'24	'25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
국고채 3년물 (증감률)	3.6	3.1	2.8	2.8	2.7	2.6	2.5	2.5	2.4	2.3	2.3
	-	(△2)	(△9)	(△2)	(△2)	(△3)	(△4)	(△2)	(△4)	(△2)	(△2)

자료: 2023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,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

(3) 추계 결과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53억원 등 2026~2035년 10년간 총 474억원(연평균 4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'34	'35	합계	연평균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(안 제87조의2)	-53	-52	-51	-50	-47	-47	-45	-44	-43	-43	-474	-4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 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	박성은	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